

碩士學位論文

#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李 相 奉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洪 昌 秀

碩士學位論文

#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李 相 奉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洪 昌 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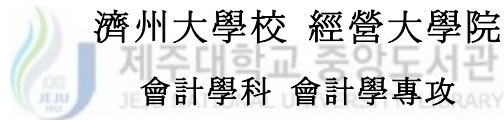
2002년

# 學校法人의 會計制度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李 相 奉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洪 昌 秀

洪昌秀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 감사의 글

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대학원 생활은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이 순간까지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대학원 진학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신성여자고등학교 철학박사 고승욱 교장신부님과 신성여자중학교 김경환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저의 부족함을 아낌없이 지도하여 주신 이상봉 지도교수님, 심사를 맡아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고성효교수님, 고종권교수님, 평소에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회계학과 강희수교수님, 이경주 교수님, 고 서현진교수님, 경영대학원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대학원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동기생인 홍성전, 강병직, 양정훈, 염경윤, 강안철, 류광미, 고원복, 조병철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말없이 늘 저의 건강을 염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저와 저의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 할 때 큰 도움을 주신 형님과 서울에 계신 매형 조무영님과 누님, 강인국 목사님과 사모님, 특히 아픈 몸으로 나를 위하여 아픈 내색 한번 없이 뒷바라지하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아내 강현실과 어머니의 건강을 늘 걱정하는 군 복무 중인 큰아들 윤학,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제주도에서 대학 생활 중인 둘째 아들 윤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저를 염려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의 動機와 目的 .....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	2
第 3 節 研究의 構成 .....	3
第 2 章 學校法人 會計制度의 特性과 先行研究의 檢討 .....	4
第 1 節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 .....	4
1. 學校法人 會計의 意義와 必要性 .....	4
2.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 .....	7
3. 學校法人 會計의 發達 過程 .....	10
4. 非營利法人 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 .....	12
第 2 節 先行研究의 檢討 .....	17
第 3 章 學校法人 會計制度의 分析 .....	20
第 1 節 學校法人 會計體系와 實態 .....	20
1. 學校會計의 種類와 財源別 實態 .....	20
2. 現行 學校會計의 흐름 .....	25
3. 單位學校 財政의 問題點 .....	35
第 2 節 學校法人 會計에 關한 諸規定 分析 .....	39
1. 私立學校法과 私學機關財務·會計 規則 .....	39
2. 私學機關財務·會計 規則에 對한 特例規則 .....	44
3. 우리나라 學校法人 會計 關聯 法·規定 .....	54
第 3 節 韓國과 日本, 韓國과 美國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	63

1. 韓國과 日本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	63
2. 韓國과 美國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	69
<b>第 4 章 學校法人 會計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b>	<b>73</b>
第 1 節 制度上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73
1. 學校와 管轄廳 會計年度의 不一致 .....	73
2. 會計 構造上 .....	73
3. 記錄의 正確性 및 信賴性 .....	75
4. 會計 報告上 .....	75
5. 資産의 再評價 .....	75
第 2 節 會計處理上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77
1. 有形 固定資産에 對한 減價償却 .....	77
2. 資産・負債의 評價 .....	78
3. 費用・收益의 認識 .....	79
<b>第 5 章 結 論 .....</b>	<b>81</b>
<b>參考文獻 .....</b>	<b>83</b>
<b>Abstract .....</b>	<b>86</b>

## 表 目 次

〈表 2-1〉 會計報告 目的의 比較 .....	14
〈表 3-1〉 學校會計의 種類別 內容 .....	20
〈表 3-2〉 學生當 年間 納入金額 .....	22
〈表 3-3〉 學校會計 全體의 흐름 .....	27
〈表 3-4〉 學校 歲入豫算 科目 및 解消 .....	29
〈表 3-5〉 學校 歲出豫算 科目 및 解消 .....	31
〈表 3-6〉 私學機關 財務·會計 規則과 特例規則의 比較 .....	54
〈表 3-7〉 우리나라 學校法人 會計 關聯 法·規定 .....	55
〈表 3-8〉 우리나라와 日本,美國의 私學機關 會計基準 比較 .....	72



## 그림 목차

<그림 3-1> 學校會計 歲入의 흐름圖 .....	26
<그림 3-2> 學校會計 支出의 흐름圖 .....	26
<그림 3-3> 豫算 編成의 흐름圖 .....	28
<그림 3-4> 決算의 흐름圖 .....	34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의 動機와 目的

일반적으로 회계라 함은 영리조직인 기업회계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영업 실적을 측정, 분석하여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발달과 함께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집단도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주로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연구, 발전되어 왔으며 학교법인 회계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은 계획적, 의식적인 이윤 추구 동기가 없고, 자산의 제공자라 하더라도 직접적, 비례적인 재무적 이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비영리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에 기업회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기관 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또는 수정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조직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근대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하에서는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재정 여건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재정 구조 또한 영세하다. 우리나라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국·공립학교와의 차별화, 최신 교육 기자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교육의 우월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학교경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이 필요하다.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학교법인이라는 관련된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현재의 재무 상태와 본래의 목적대로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자발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학교법인의 회계제도는 학교경영의 이해관계 집단이 요구하는 경제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 되었다기 보다는 감독관청의 예산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예산회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나 집단에 그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회계 시스템은 학교경영에 관심이 있는 이해 관계자나 집단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합리적인 자원조달과 효율적, 합리적 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제도에 관련된 학위 논문, 기존의 여러 문헌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학교법인 회계와 관련 규정 조사를 중심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특성 및 학교법인

회계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여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중에서 사립중등학교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립대학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또한 수익사업회계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第 3 節 研究의 構成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구성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였고, 제 2 장에서는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특성과 선행 연구 검토를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분석 즉 학교법인 회계 체계와 실태, 학교법인 회계에 관련된 규정의 분석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비교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학교법인 회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순으로 기술하였다.

## 第2章 學校法人 會計制度의 特性과 先行研究의 檢討

### 第1節 學校法人 會計의 特性

#### 1. 學校法人 會計의 意義와 必要性

회계(Accounting)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회계는 원래 작성자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기술(Art)로 정의되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AICPA)는 1941년에 회계용어공보(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 ATB) 제1호에서 “회계란 재무적 성격을 가진 거래나 사건들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기록·분류·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는 회계가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거래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거래의 회계처리와 회계보고를 중시하며, 회계정보 작성자의 관점에서 생산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1960년대 이후 회계가 정보를 측정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즉, 회계정보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회계정보의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미국 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는 1966년에 기초적 회계 이론에 관한 보고서(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 ASOBAT)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1)</sup>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나 학교는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며 그 목표가 인간의 교육과 학문 연구이므로 기업회계와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미국 회계학회(AAA)의 비영리

---

1)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기관회계위원회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sup>2)</sup>

“영리와 비영리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계획적 또는 의식적인 이윤 동기 유무와 각 조직의 지분에 대한 관심의 여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즉, 비영리 조직은 첫째, 계획적 의식적인 이윤 추구 동기가 없으며, 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또는 개별적으로 지분이 소유되거나 매각 또는 교환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의 제공자(기부자나 후원자)라고 해도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재무적 이득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영리기업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이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 종교단체, 병원, 보건복지기관, 자선단체, 정부기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법인회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특수성, 특히 예산 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받은 재원을 예정된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과 다음 연도를 위하여 얼마를 남겨 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으나 학교법인 회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특수성 때문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 내용이 기업회계와는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보아진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 회계는 비영리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같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단지 학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의 자원 조달은 국

---

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AAA),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actice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46(1971), p. 94.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보조금이나 사회의 독지가로부터의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재정 소요에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학교의 유지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영리기업과는 달리 출연자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기본금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및 배당도 받지 못 하는 등 어느 누구도 재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없다. 영리기업의 경우 출자자인 주주는 기업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당을 받으며, 타인에게 소유 지분의 매각 및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권도 갖게 되고, 출자자인 주주가 사망시 상속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우 출자가 아닌 출연으로서 학교법인에 기부를 한 출연분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어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잔여 재산은 출연자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분의 전매, 증여, 상속 등도 있을 수 없고 같은 교육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에 통합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셋째, 교육 시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때에는 충분한 투자 회수를 미리 검토하여 투자회수율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같이 투자회수율에 기초하지 않고 학교의 유지 발전 및 우수한 인간의 교육 및 인재 육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넷째,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렵다. 학교기관은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영리기업의 경우 투자한 자금 이상의 산출물을 기대하며, 그 산출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산출물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즉,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며 또한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 점은 사립학교나 국·공립의 학교가 동일하다.

다섯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회의 공유물인 학교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보유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수입된 자원과 취득된 자산은 고유 목적사업에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는 일시적인 교육이나 단기적인 기술의 습득이나 연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존속되고 발전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비영리기관의 경우 즉,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자선단체, 기타 공익법인의 서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Service)에 대한 효과는 학교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나타난다.

## 2. 學校法人 會計規則의 特性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 동법시행령(1969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4396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246호)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1996년 6월 29일, 교육부령 제67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회계에 관한 중요한 특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건전 재정의 원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재무·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정책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 원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학교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3) 자금의 관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

학교법인과 학교는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비 진도에 따르는 자금 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

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4) 차입금(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 차입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5) 예산총계주의 원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1조)

학교법인과 학교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6)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1)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 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7) 회계의 방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7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8) 계약의 원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예정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9) 감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재산의 구분(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2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 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① 교육용 기본재산 : 교지, 교사, 체육장 등
- ② 수익용 기본재산 : 학교경영을 위한 수익재산

(2) 보통재산

- ① 법인용 재산 :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재산
- ② 학교용 재산 :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11) 회계의 구분(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2) 회계연도(사립학교법 제30조)

학교법인의 회계 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에 종료된다.

13) 예산과 결산(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회계년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기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의 원칙으로 건전 재정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단식부기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학교법인 자체의 회계와 학교회계를 구분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

계는 이를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수익 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산 회계제도에 입각한 자금 회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 3. 學校法人 會計의 發達 過程

우리나라의 근대 기업회계제도는 1912년 3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상법회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체계적인 회계 기준은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195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회계용어와 재무제표 작성 양식이 통일되어 독자적인 한국의 기업회계제도가 완성되었다.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 산하의 기업회계준칙 재정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 실정에 맞는 기업회계준칙 초안을 제정하여 공표 되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규정하여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실무상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기초한 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 기준으로는 비영리법인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의 회계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학교법인 회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극소수의 대학교수나 회계 전문가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학교 회계나 연구 기관 회계 등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 필요성의 인식 또는 문제점 제기 정도로밖에 연구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회계로서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246호로 문교부에 의해 제정되어 그 후 8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1981년 2월에 제정된 “사학기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1996년 6월 29일 교육부령 제679호로 전문 개정을 하고 그 후 2차의 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

리법인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 원칙은 제정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1969년에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기업회계(영리법인)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학교법인 회계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회계는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낙후되어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이 그 동안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비영리법인은 많으나 대부분 영세하여 관련 회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둘째, 영리기업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의 관리 감독기관이 중앙 부처에 있어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적었고, 셋째, 비영리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넷째,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 문제화된 것이 없었고, 다섯째,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자 등과 같은 외부 이해 관계자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에 관한 법적 요구가 없었으며, 여섯째, 공인회계사들이 비영리회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사회적으로도 학교법인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정부의 감독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 정부나 학교, 의료법인, 공익법인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그 결과보고는 더욱 중요해지고 영리법인인 기업회계와 비영리법인들의 회계는 기본 목적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다만, 기업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주주,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정부 규제기관 등의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로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의 획득 과정과 결과 보고가 중요한 사항이며, 비영리법인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기증자, 출연자, 회원, 서비스 수혜자, 국민, 정부

---

3) 주인기·정병수,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기준(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5, p.265

의 감독기관 등으로 수탁된 자원이 법규나 정관, 공익성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추구하는 목적이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회계 기준 제정이 필요하여 최근 학교법인을 위시한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4. 非營利法人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

“비영리법인회계가 기업 회계와는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영리기업과의 본질적인 차이 및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고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sup>4)</sup> 이처럼 비영리법인회계가 기업 회계와 별도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양자간의 차이를 회계 기준의 원칙과 회계 보고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企業基準의 原則

Gross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의 회계 실무의 차이에 관한 논란이 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sup>5)</sup>

첫째, 발생주의에 대하여 현금주의 혹은 수정현금주의 채택

둘째, 자금 회계의 적용

셋째, 고정 자산의 계상 여부 및 감가상각에 관한 문제

넷째, 자금 계정간의 전용 및 장래의 사업을 위한 충당

다섯째, 기부금, 서약 및 비화폐적 서비스의 제공

이러한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회계의 차이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

4) Robert & Anthony, "Making Sense of Nonbusiness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May-June, 1980), p.83

5) Malvarn J. Gross, Principle of Accounting & Financial Repor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N.Y. : John Wiley & Son Inc. 1979), pp 17-20.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기본 개념이 되는 회계 보고의 목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會計報告 目的의 比較

FASB의 “재무회계 개념에 관한 보고서 No. 1(SFAC No. 1) 영리기업에서의 회계보고 목적과, No. 4(SFAC No. 4) 비영리단체에서의 회계 보고의 목적”은 둘 다 모두 회계 보고의 유용성을 최고 이념으로 하여,

첫째, 정보 이용자의 유형 및 의사 결정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정보 이용자의 광범위한 이해 관심과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셋째,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회계 보고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회계 보고의 목적을 전기한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 <표 2-1> 과 같다.

### <표 2-1> 회계 보고 목적의 비교

구 분	회 계 보 고 목 적		목 적 의 비 교
	비영리단체	영 리 단 체	
가. 정보이용자 및 그들이 수행하는 중요 의사 결정	현재 및 잠재적인 자원의 제공자 그리고 기타의 이용자. 비영리 단체에 제공할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 투자 및 대부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	투자자 및 채권자도 자원의 제공자에 포함. 이와 같이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공통되지만 각각에 있어 자원을 제공하는 이윤은 다르다. 즉, 영리기업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화폐적 보상이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게 되나 비영리단체에서의 자원의 제공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제공한 자원에 상응하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 정보이용자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모색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①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② 비영리단체의 관리자가 수탁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① 배당이나 이자의 전망 그리고 처분으로부터의 자본이득 또 증권이나 사채의 상환 및 만기에 관하여 그 시기 금액,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② 소유주에 대한 수탁책임의 이행에 관한 정보	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자원제공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로부터 목적의 차이가 유발되고 있다.  ② FASB개념보고서 No. 4와 No. 1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No. 4에서는 정보이용자의 부차적인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그치고 있다.

구 분	회 계 보 고 목 적		목 적 의 비 교
	비영리단체	영 리 단 체	
다. 이러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의 형태	<p>① 경제적 자원의무 순자원 및 자원의 효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래사건, 상황에 관련된 정보</p> <p>② 회계기간 동안의 단체의 성과와 순자원의 금액 및 내용의 변화에 대한 기간적 측정에 관한 정보 서비스 활동의 투입 및 성취도에 대한 정보는 비영리단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하다.</p> <p>③ 현금 및 유동자원의 수입 및 지출 부채에 대한 차입과 상환에 대한 정보</p>	<p>①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다른 실체나 소유주지분으로 자원을 이전시켜야 될 의무 및 청구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래사건 환경에 관련된 정보소유지분에 관련된 정보</p> <p>②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정보, 재무구조의 중점은 수익 및 그 구성요소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p> <p>③ 현금의 유입과 지출, 부채에 대한 차입과 상환 및 자본거래 현금배당 및 기타의 자원 분배에 관한 정보</p>	<p>① 비영리단체를 구분시켜주는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결산시 잔여액 재산의 분배권이 부여되는 소유주지분의 개념이 비영리단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p> <p>② 비영리회계의 특성으로 영리기업에서의 순이익에 상응되는 성과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p> <p>③ 비영리단체에는 소유주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현금배당이나 기타자원의 분배는 하지 않는다.</p>

구 분	회 계 보 고 목 적		목 적 의 비 교
	비영리단체	영 리 단 체	
다. 이러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의 형태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적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및 해석	④ 이용자에게 공시의 수단으로 설명 및 해석이 제공된다.	④ 목적은 공통된다.



## 第2節 先行研究의 檢討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회계 제도는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246호로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그 후 8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 회계는 아직도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학교법인 규모의 대형화로 정부 및 학부모,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올바른 회계 정보를 전달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이나 성과 측정이 어렵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회계는 영리기관인 기업의 회계를 중심으로 연구 발전되어 비영리기관의 회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최근 정부나 학교, 의료기관이나 공익법인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그 결과 보고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 1. 이권호의 연구(1992)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검토하여 보면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1981년을 기점으로 종래의 단순 수지회계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런 회계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가져오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서는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제정하여 학교 경영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효과적인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방법으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법인 일반 업무회계와 각급 학교(대학교육기관,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기타)가 통일된 단일의 회계 방법인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은 계정과목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수지회계와 관련한 예산제도 운영시 비예산과목<sup>6)</sup>에 대한 예산의 계상이 통제되고 있어 과목의 성질상 자금의 원천과 운용의 예측에 있어서 예산상에서 계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복식회계의 성격이나 진실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회계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자산 재평가는 필요에 따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평가세 등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나, 임의성이나 객관성의 결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기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넷째, 감가상각제의 채택으로 올바른 재무 상태를 알고, 일정한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막대한 고정 자산의 확보 등을 위해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며,

다섯째, 사학기관 회계 관계 규정에는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해 관계자 집단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관리적, 원가적 측면 즉, 관리 회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학기관의 회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체의 회계 기준의 확립과 회계 제도의 체계화는 정부의 일률적인 법령의 제정, 공포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과 동시에 관련 회계 이론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회계 전문가와 회계실무자가 참

---

6) 비예산과목이라함은 선급금, 가지급금, 가수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차대조표계정과목명세표에서 정하고 있음.

여하여 사학기관회계 이론의 체계화와 제도 정립을 위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설립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 2. 정순의 연구(1996)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회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회계규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며, 예산 제도를 감독기관에 의한 강제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승화시키고 자산 재평가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회계 처리적 측면에서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도입이 필요하며, 자산·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회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의 수정이 요구되며,

셋째, 학교 및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가 계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사학기관의 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이에 관한 학계와 관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의 연구들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총괄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관련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일본, 미국의 사학기관 회계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第3章 學校法人 會計制度의 分析

#### 第1節 學校法人 會計體系와 實態

##### 1. 學校會計의 種類와 財源別 實態

각급 학교에서 취급하는 회계는 교직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목적경비를 부담하는 교비회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회계와 학부모 등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보관금·잠종금 등을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회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표 3-1> 과 같다.

<표 3-1> 학교 회계의 종류별 내용

구 분		용
학교비   회 계	교 비 회 계	관할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성격의 시설비(학교교육비로 충족할 수 없는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적 소요경비)로 예산배부 과목을 위배하여 집행할 수 없고 예산액을 초과 집행해서 안되며 금액(일상경비)과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급경비)으로 교당·급당경비, 건물유지비 및 교육사업비 성격의 목적경비도 관할교육청의 기타사업지원금으로 예산으로 배부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못한다.
	학 교 운 영 지 원 회 계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교에서 수입, 지출하는 회계이며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급식비, 특기적성비, 앨범비 등이 포함.
	학 교 발 전 기 금 회 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부모나 동창회, 외부인사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이나 각출금품, 모금금품이 해당되는 회계
	세입·세출외 현 금 회 계	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에 속하지 않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회계

위의 표에서와 같이 학교 회계는 크게 4개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재원별 종류와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법인의 재원은 크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납입금, 학교법인 부담의 법인전입금과 국가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재정의 주 재원 요소인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국가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생 납입금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1969년 7월 23일, 문교부령, 2002년 2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9호 45차 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의 학교 (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표 3-2>와 같이 전국적으로 1980년도 이후 납입 금액이 국·공·사립 중등학교 학생 납입금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 납입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누어지나 이중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학생 납입금의 주된 재원은 수업료와 입학금이라 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중학교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text{학생당 연간 납입 금액} = \text{수업료} + \text{학교운영지원비}$$

〈표 3-2〉 학생당 연간 납입 금액

(단위 : 원)

구 분	중 등 학 교		일 반 계 고 등 학 교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1 9 7 0	20,700	26,100	27,400	31,480
1 9 7 5	56,310	56,310	78,100	78,100
1 9 8 0	125,880	125,880	196,360	196,360
1 9 8 5	202,800	202,800	334,200	334,200
1 9 9 0	302,400	302,400	516,000	516,000
1 9 9 5	500,400	500,400	883,200	883,200
2 0 0 0	694,800	694,800	1,226,400	1,226,400

주 : 1) 자료 : 1.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2. 사학경영정보자료집 제2집, 1998  
2) 중·고등학교의 연간 납입 금액은 특급지 최고치 기준임.

위의 표에서와 같이 학생당 연간 납입 금액은 1970년도 초반에는 중·고등학교가 국·공립과 사립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이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990년 302,400원에서 2000년 694,800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16,000원에서 1,226,400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2001학년도까지는 학생 납입금은 사립학교 재정의 가장 큰 재원이었으나 2002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점차 국고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 법인 전입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의 경우 반드시 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2001년 4월 1일 기준<sup>7)</sup> 중학교는 24.5%, 고등학교는 46.6%로 중등교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학법인은 설치·경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이 있어야 하고 이를 학교의 기본 운영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9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54832호. 2001년 10월 31일 2차 개정, 대통령령 17397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sup>8)</sup>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규정 제13조)”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규정 제14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 전입금은 극히 일부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학교총교육비의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운영경비의 95% 이상을 학생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부담금인 법인전입금은 3~5%로 아주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이 저조하게 된 원인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비수익성 내지 저수익성인 토지나 임야가 교육정책자문회의 “사학진흥방안(1999)”을 살펴보면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의 경우 62.3%, 대학의 경우 37.6%나 되어 법인의 수익이 없거나 저조하게 된 원인으로 법인전입금의

7) 2001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8) 1.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 편제 완성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학과·학생정원을 증설,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그 증설,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총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6호 서식(학교세입예산과목 및 해소)에 의한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전입금수입액, 원조보조금수입액(재정결함지원금 제외), 기부금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충당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법인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충당 능력은 비수익성 또는 저수익성 재산인 임야, 토지, 전답 등을 고수익성으로의 전환이 소극적이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미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본 재산의 일부를 고수익성 부동산으로 하고 일부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수익성 제고 및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국가지원금

국가가 주관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교부 결정을 포함하여 관련 절차 및 감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1969년 7월 19일 문부령 제24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자율적인 납입금 책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등교육의 평준화로 사립학교의 납입금이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인하여 공립학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제도에 현재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가 2002년 현재 중학교 100%, 고등학교는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



구하고 사립 중등학교 재정 구조는 학교법인의 영세성과 국가지원의 미흡으로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사립학교의 국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학교의 설립은 학교법인이 하였지만 운영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준공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단순히 재정결함을 지원하기보다는 공교육의 공비부담 원칙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사립학교 지원이 크게 늘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도 공·사립간 불균형이 많이 없어졌으나 사립학교의 시설 수선이나 새로운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립간 시설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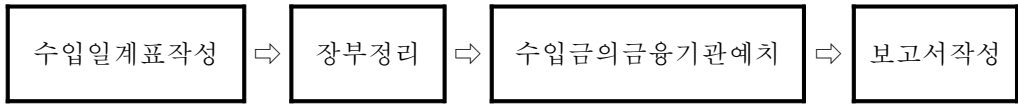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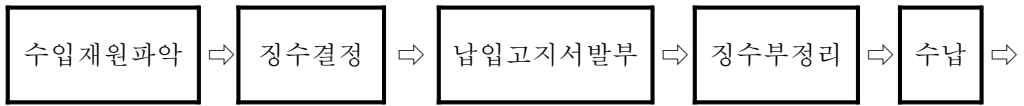
## 2. 現行 學校 會計의 흐름

학교회계의 흐름을 세입·세출 업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학교회계 전체의 흐름을 살펴본 후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 결산의 순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 1) 세입의 흐름도

세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 경제주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원인이 될 현금을 수납하는 것으로 세입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로 이러한 수입행위는 징수행위(징수결정, 납입고지)와 수납행위로 구분되며 다른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물론 회계간의 이입을 포함하며 그 흐름도는 <그림 3-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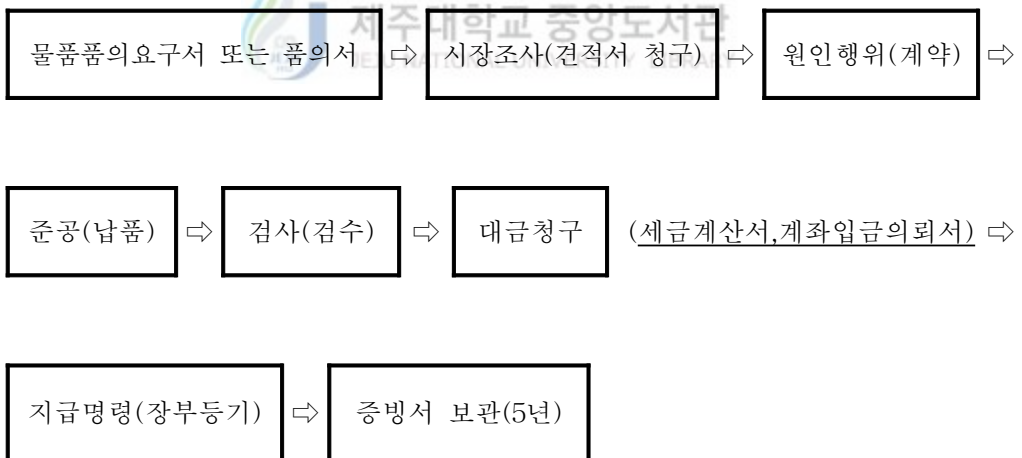
<그림 3-1> 학교회계 세입의 흐름도



## 2) 지출의 흐름도

지출은 세출 예산의 사용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명령하고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흐름도는 <그림 3-2> 와 같다.

<그림 3-2> 학교회계 지출의 흐름도



## 3) 학교회계 전체의 흐름

학교 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과 통제 및 결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흐름도는 <표 3-3> 과 같다.

〈표 3-3〉 학교회계 전체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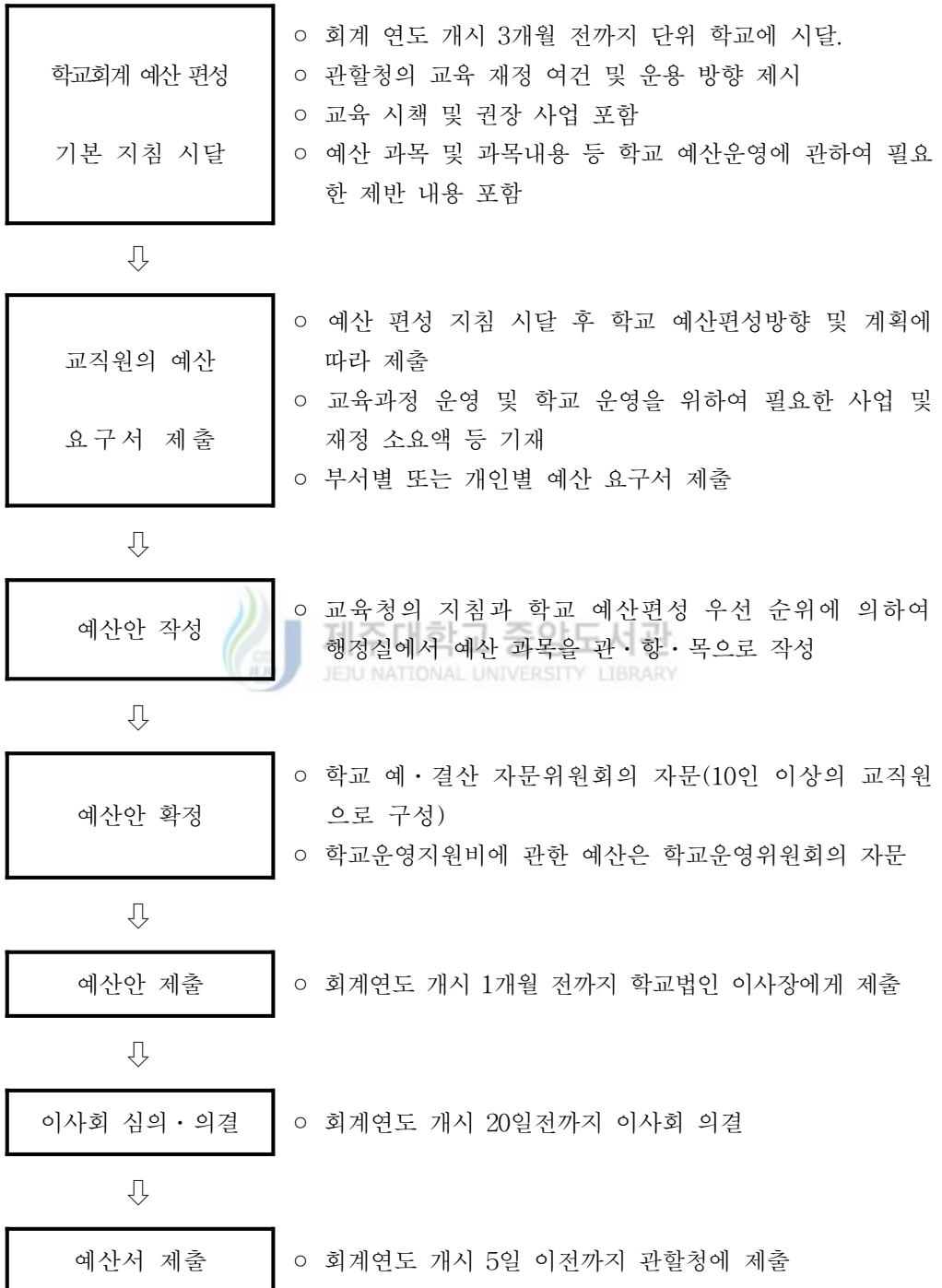
①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요령 작성
	수입과 지출의 추정 및 예산 편성 자료 수집
	예산(안) 확정
② 예산의 심의	학교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
③ 예산의 집행 및 통제	예산 집행 요구
	경영 학교장의 승인 및 집행(예비비 포함)
④ 결 산	학교법인 감사의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학교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

#### 4) 예산 편성의 흐름

##### (1) 학교 예산의 의의 및 편성 절차

학교 예산이란 학교가 1년간 교육 활동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계획표로 예정적 계산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재정 운영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에 당해연도의 재정 규모 내용 및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편성 지침을 받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 길잡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에서 예산안 편성의 흐름을 〈그림 3-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 예산 편성의 흐름도



(2) 학교회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성질 및 기능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예산 과목이라 하며 이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6호, 별지 7호 서식 및 교육청 예산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4> 와 <표 3-5> 같다.

<표 3-4> 학교 세입 예산 과목 및 해소

관	항	목	과 목 해 소
1.사용료 및 수수료	1.납교금	1.입학금 2.수업료 3.수험료 4.증명료 5.기타납입금	학생입학금 수입 학생수업료 수입 입학수험생의 수험수수료 졸업증명 기타 각종 증명수수료 기숙사입사료 또는 입학요강교부료 등
2. 전 입 금	1.법 인 부담금	1.연금부담금 2.재해보상부담금 3.의료보험부담금 4.기 타 5.지정사업지원금	법인의 연금부담금 법인의 재해보상부담금 법인의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부담금 법인지정사업비
3. 원 조 보조금	1.국 내 보조금  2.외 국 원조금	1.재정결함 지원금 2.기타사업 지원금 3.특정보조금 1.외국기관 단체원조금 2.재외단체보조	교육청 재정결함지원금  교육청 기타사업지원금 수입  전 1,2목 이외의 지원금 국외의 각종원조 외국에 있는 재단의 보조 또는 원조

관	항	목	과 목 해 소
4. 이 월 금	1.전년도 이월금 2.이 월 사업비	1.전년도불용액 2.이월사업비	전년도 사용 잔액  전년 도중 미종료사업비
5. 과 년 도 수 입	1.과년도 수 입	1.과년도수입	과목 통합(1.납교금, 2. 설립자부담금, 3. 국내 보조금, 4. 외국 원조금 )
6. 기 부 금	1.기 부 금	1.기 부 금	과목통합(1. 특정기부금, 2. 일반기부금)
7. 차 입 금	1.차입금	1.차 입 금	과목통합(1. 은행차입금, 2. 개인차입금)
8. 적 립 금	1.적립금	1.적립금	노후건물 증·개축 등 목적의 적립금
9. 학교운영 지 원 비	1.회비수입  2.과년도 수 입 3.교육활동 경 비 4.수익자부 담교육비  5.이 월 금	1.회비수입 2.기부금 1.과년도수입  1.교육활동경비 2.특기적성교육비 3.수학여행경비 4.학생수련비 4.학생급식비 1.이 월 금	학부모의 회비 수입  과년도 수입
10. 잡 수 입	1.생산품 매각대 2.물 품 매각대 3.예금이자  4.잡 수 입	1.생산물처분대  1.불용품매각대  1.예금이자  1.교내재산 임 대 료 2.변 상 금 3.위 약 금 4. 잡 수 입	과목통합(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내 매점·이발관·기타 재산사용료 수입 망실 등에 의한 변상금 계약 위반에 따른 보증금 수입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표 3-5〉 학교 세출 예산 과목 및 해소

관	항	목	과 목 해 소
1. 인건비	1.봉 급 2.정액수당 3.기타제수당 4.부 담 금	1.교원기본급 2.사무직기본급 1.교원수당 2.사무직수당 1.교원복리후생비 2.사무직복리후생비 1.연금부담금 2.재해보상부담금 3.의료보험 부담금 4.기타부담금	교원기본급(기말 수당 및 정근수당 포함) 사무직기본급(기말 수당 및 정근수당 포함) 교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직무수당 사무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직무수당 교원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직 및 기능직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교직원 연금부담금 교직원 재해보상부담금 교직원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사용주요용보험료 등
2. 관리운영비	1.학 교 운영비	1.학교교육비 2.기타운영비 3.지정사업운영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청 기타사업지원금으로 지원되는 해당사업비 법인지정사업비
3. 입시관리비	1.입시경비	1.입시경비	
4. 상환금	1.차입금 상 환	1.원금상환 2.이자상환	
5. 과년도지출	1.과년도지출	1.과년도지출	
6. 재산조성비	1.시 설 비	1.시 설 비	
7. 적 립 금	1.적 립 금	1.적 립 금	노후건물의 증·개축 등 목적의 적립금
8. 예 비 비	1.예 비 비	1.예 비 비	

관	항	목	과 목 해 소
9. 학교운영 지 원 비	1.교원연구비 2.학생복지비	1.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기본급 및 가산금
		1.학생복지비	학생복지비 지원
	3.인건비	2.자치운영회비	회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
		1.수 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
		2.상용잡급인건비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4.운영비	3.일용잡급인건비	
		4.보험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고용보험료
		5.연금지급금	학부모회 직원에 대한 퇴직금
1.수 당		당직수당 등	
2.학교교육비		도서구입 등	
3.시 설 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비	
5.체육진흥비	4.실험실습비		실험 실습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 실험실습 자산취득비, 생활관 운영비, 실습 관리실 운영비 등
		1.체육진흥비	육성 운영부별로 구분 계상
6.학부모활동 지원	7.기부사업비	1.학부모회등의 활동지원비	학부모회 등의 활동별로 구분 계상
		1.기부사업비	기부 목적에 따른 사업별로 계상
8.수익자부 담교육비	8.수익자부 담교육비	1.특기적성 교 육 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의 수익자부담 경비
		2.수학여행경비	
		3.학생수련비	
		4.학교급식비	

### (3) 예·결산의 공개

위의 과정에 따라 편성·집행된 예·결산은 관할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결산의 공개는 학부모 또는 국민이 낸 돈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가 학교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예·결산의 공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예·결산서를 인쇄하여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대규모 학교의 경우 간단한 세입·세출 예산의 성질별 조서 등을 송부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예·결산 공개를 위해 학교 게시판이나 행정실에 예·결산서를 비치하여 언제나 공개가 가능 할 것이다.

#### (4) 예산 집행의 흐름

예산의 집행이란 이사회의 의결·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회계 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지출 원인행위의 실행, 세출 예산의 이·전용, 계약의 체결, 지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5) 결산의 흐름

##### 가. 결산의 의의와 기능

##### 가) 결산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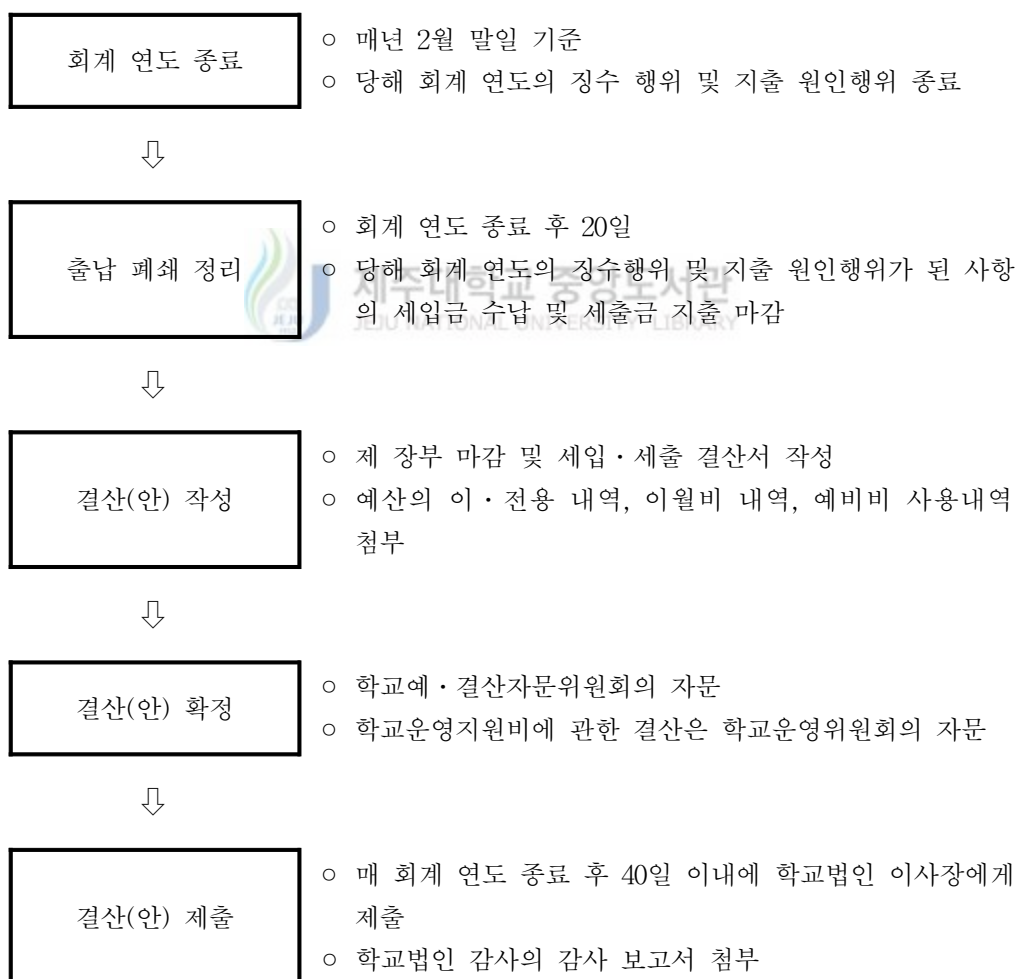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결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결산은 한 회계 연도 동안 학교 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학교의 사후적 재무 보고를 의미하며 예산 과정 절차의 최종적인 단계로 그 성질상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나) 결산의 기능

학교 회계의 결산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결산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의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결산 심의는 장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자료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하여도 일정한 준거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결산 과정을 거치고 결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분배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sup>9)</sup>라고 하고 있으며 결산의 절차를 보면 <그림 3-4> 와 같다.

<그림 3-4> 결산의 흐름도



9) 성삼제,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p. 98.



이사회 심의·의결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심의 확정



결산서 제출

-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

### 3. 單位學校 財政의 問題點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발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수입으로 하여 재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재정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회계 관리와 같이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면 학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학교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되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의 관리도 하나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학교에서의 재정 운영은 여러개의 회계 실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 규정도 각각 다르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며 교육청에서 정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 연도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 마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액은 그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의 경우 학교 회계연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와는 상관없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준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학교회계 기간과 재정결함지원금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예·결산 등 회계 업무의 간소화·단일화 및 학교회계상 나타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조상충용, 부채 등)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 예산회계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예산 편성, 예산 집행 및 통제, 결산의 측면을 살펴보고 단식부기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예산편성.

첫째, 교육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주체와 교육계획이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예산서 제출의 시기와 학교 교육계획 제출의 시기가 달라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학교 교육계획이 수립된다.

둘째, 예산심의 과정에 회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문 및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학교 예·결산자문위원이나 학교운영위원이 교원 및 학부모로 학교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셋째, 회계연도가 학교 회계연도와 교육청 및 지방 자치단체회계연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학교회계의 총체적인 파악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 2)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 활동으로 예산의 집행에는 예산집행지침, 관계 법령등 많은 제약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산집행은 정해진 목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교육계획의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라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하여야 하며 교비회계는 교비회계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지원비대로 다른 지침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종합적인 학교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결 산

결산이란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결산 과정도 교비회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 예·결산자문위원과 학교운영위원(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의 자문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도 자문 및 심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전문적인 결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편성시 작성한 과목을 얼마나 적절히 집행했는가를 심의할 뿐 편성 예산이 얼마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목표 성취도를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운영위원의 예·결산의 자문과 관련된 문제점은 예산을 자문한 학교운영위원들이 3월말에 임기가 만료되어 결산은 신입 학교운영위원들이 자문을 하게 되어 예산 자문의 연계성 및 심도 있는 자문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4) 단식부기 회계 처리

사립학교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회계의 처리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비영리기관인 사립학교는 관할청으로부터 예·결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회계 처리의 적절성보다 예산편성 및 자금 관리의 적절성에 있다. 비영리기관은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의 수지를 중심으로 거래를 인식하며, 회계도

단식부기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단식부기의 회계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회계 처리를 현금의 수지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 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 규모나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면 검증 기능이 없는 단순한 회계 처리인 단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으로는 회계 정보의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학교 회계처리가 현금주의를 채택하여 회계처리가 현금의 수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 계산이 불가능하여 채권·채무의 파악이 힘들고 단위학교의 재정상태와 영업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3) 단식부기는 복식부기와 같은 “거래의 이중성” 및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동 검증기능이 결여되어 있어 회계의 자의적 행위를 배제하기가 어렵고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불가능하다.

(4) 단식부기는 개별 항목에 우선을 두고 수년간 이월되는 지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나 복식부기의 대차대조표 항목들은 영구 계정으로 기초 금액이 결정되고 당기 발생액이 누적되면 자동적으로 기말금액을 산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복식부기 하에서 정확한 항목별 총계 파악이 가능하다.

## 第2節 學校法人 會計에 關한 諸規定 分析

### 1. 私立學校法과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제1장 총칙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재무와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정책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총 7개의 장과 60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칙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목적(제1조), 통칙(제2조), 정의(제3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4조), 감독청(제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제6조), 자금의 관리(제7조), 차입금(제8조), 출납폐쇄시기(제9조)

2) 제2장 예산과 결산 : 세입세출의 정의(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제11조), 예산편성 요령(제12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제15조), 예산편성 절차(제16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제17조, 제18조), 예비비(제19조), 성립전 예산의 사용금지(제20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21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제22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제22조의2), 결산(제23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제24조).

3) 제3장 회계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제25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제26조), 회계의 방법(제27조), 수입(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지출(제32조, 제33조, 제34조), 계약(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감사(제41조)

4) 제4장 재산 : 재산의 구분(제42조), 재산의 관리자(제43조), 등기의 절차(제44조), 증자보고(제45조), 소유권의 이전(제46조)

5) 제5장 물품 : 물품의 정의(제47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제48조), 물품의 관리 의무 및 물품의 관리(제49조, 제50조), 불용품의 처리(제51조)

6) 제6장 장부와 서식 : 법인의 사무소와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제52조, 제53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제53조의 2), 각종 서식(제54조)

7) 제7장 보칙 : 채무보증 금지(제55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제57조), 사무의 인계·인수(제58조), 준용(제59조), 위임(제60조)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sup>10)</sup>

(2) 감사의 직무로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sup>11)</sup>

(3)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sup>12)</sup>

(4)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업무에 속

---

10)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11)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임원의 직무)

12)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하는 회계는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13)</sup>

(5) 학교법인의 회계 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sup>14)</sup>

(6)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sup>15)</sup>

(7) 학교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 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sup>16)</sup>

(8)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sup>17)</sup>

① 부동산

②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④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학교법인의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9)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8)</sup>

---

13)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14)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15)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16) 사립학교법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1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18)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10)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19)</sup>

(11)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 차입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sup>20)</sup>

(12)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sup>21)</sup>

(13)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sup>22)</sup>

- ① 예산총칙
- ② 수입지출예산명세서
- ③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 ④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일람표
- ⑤ 과년도 미수액조서
- ⑥ 추정대차대조표
- ⑦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 ⑧ 기구와 정원일람표
- ⑨ 이사회관계 회의록 사본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와 11호의 서류와 학급

---

19)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2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

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9조(출납폐쇄 시기)

2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1항(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편성표 및 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sup>23)</sup>

(14)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sup>24)</sup>

(15) 예정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sup>25)</sup>

(16) 사립학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26)</sup>

- ①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 한다)
- ③ 수입지출총괄부
- ④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 ⑤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 ⑥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17) 학교에서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sup>27)</sup>

- ① 재산대장(교육용재산과 도면)
- ②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 ③ 징수대장
- ④ 수입부
- ⑤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 ⑥ 수입·지출의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

2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2항(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2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2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2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27)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⑦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⑧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18) 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 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이 규정에 의한 보존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sup>28)</sup>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전 재정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법인과 학교 회계의 회계를 구분하고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회계 단위로 회계처리 하고 수익 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예산회계에 입각한 자금회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 2.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에 對한 特例規則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보다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1996년 6월 29일 교육부령 제679호로 전면 개정되어 현재까지 2차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학기관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총 4개의 장과 4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1)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적용 범위 등(제2조), 정의(제3조).

2) 제2장 예산 : 예산 편성의 요령(제4조), 예산총계주의(제5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제6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제7조, 제8조), 예산의 내용(제9조), 예산의 부속서류(제10조), 예산 집행의 내부 통제(제1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12조), 예산의 전용(제13조), 예산편성의 예외(제14조)

3) 제3장 회계 : ①회계원칙 및 재무제표(제15조~제17조), ②자금계산서(제18조~제21조), ③대차대조표(제22조~제26조), ④운영계산서(제27조~제29조), ⑤자산·부채의 평가(제30조~제35조), ⑥종합재무제표(제36조~제38조)

4) 제4장 결산 : 결산의 내용(제39조),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등(제40조), 결산 부속서류(제41조), 결산서의 작성·제출(제4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는 이 규칙 하나에 자금관리,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계약, 재산관리, 물품, 장부와 서식, 기타 보증문제 등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는데 반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회계와 예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는 회계처리를 단식부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학기관 중 대학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급성장하여 온 거대한 사립대학의 복잡해지는 자산 보호와 관리, 재정활동, 재무상태 및 운영 실적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회계 실체로 하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내용을 총칙, 예산, 회계, 결산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총 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총칙중 제1조 목적에서는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 (2) 회계원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원칙<sup>29)</sup>의 내용은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으로 회계 정보가 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호의 복식부기원리와 제5호의 중요성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보아진다.

제15조 제2호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신뢰성(Reliability)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성(Objectivity)과 공정성(Fairness 또는 Freedom from Bias)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호인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료성 또는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제4호인 “회계 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속성 또는 일관성(Consistency)이 사학기관의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기본 특성임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15조 제5호인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요성(Materiality)을 규정한 것으로, 중요성은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인식을 위한 기준으로 기업 회계에서 계속 인정되고 있는 일종의

---

29)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의 원칙)

회계 관습으로 실용성과 편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학기관의 회계가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질적 특성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

### (3) 예 산<sup>30)</sup>

예산은 법인과 학교의 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예산의 확정 및 제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내용, 예산의 부속서류, 예산 집행의 내부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전용 및 예산 편성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4) 재무제표<sup>31)</sup>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서는 사학기관의 회계 보고서로 ① 자금계산서, ② 대차대조표, ③ 운영계산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자금계산서<sup>32)</sup>

자금계산서란 특정 회계연도 자금의 수입 원천금액, 지출용도 금액을 계산하여 자금의 이동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업의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것이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 수입 예산 및 자금 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 수입 및 자금 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 계산을

3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제14조.

31)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

32) 사학기관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자금 계산은 자금 수입란과 자금 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 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 수입 및 자금 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금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수입을 예산 항목과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 금액 및 유동 부채중 예산 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 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 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 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대차대조표<sup>33)</sup>

대차대조표는 자금 운영내용 중에서 운영 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으로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기타자산 및 고정 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 및 운영 차액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작성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년 기준(One year Rule)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수표수불명세서, 선급금명세서, 가지급금명세서, 선급법인세명세서, 받을어음명세서, 투자와기

---

3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타자산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미지급명세서, 가수금명세서, 지급어음명세서, 어음수불명세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학교채명세서, 기본금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 ③ 운영계산서<sup>34)</sup>

운영계산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영계산서를 통하여 전반적인 재무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운영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 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운영 계산의 방법으로 운영 수익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 수익 별로 계산하며, 운영비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 대체액 및 당기 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기본금 대체액은 당해 회계연도 중의 고정자산 구입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설립자기본금대체액·법인대체액·제적립금대체액 및 기타기본금대체액으로 표시하며, 당기운영차액이란 운영 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는 전입금명세서, 예비비사용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 등이다.

## (5) 자산·부채의 평가

### ① 자산의 평가 기준<sup>35)</sup>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 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

3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3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규정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의한다.

② 자산 재평가<sup>36)</sup>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의 재평가 방법 및 재평가 차액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 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대손상각<sup>37)</sup>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채권이나 고정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 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투자유가증권의 평가<sup>38)</sup>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 원가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충당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감가상각<sup>39)</sup>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3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

37)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

38)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

39)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 ⑥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sup>40)</sup>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률로 하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시 발생하는 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 (5) 종합재무제표<sup>41)</sup>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기업회계의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한다.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재무제표를 합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하며, 종합재무제표는 종합자금계산서, 종합대차대조표, 종합운영계산서로, 합산재무제표는 합산자금계산서, 합산대차대조표, 합산운영계산서로 구성된다.

### (6) 기본금 및 적립금<sup>42)</sup>

#### ① 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의 운영차액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하며 재정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을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기본금을 전기이월운영차액수정으로 대체한다.

4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

4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4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5조, 제26조.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sup>43)</sup>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때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수입란에 당해 적립금에 대응된 각종 기금의 인출액을 인출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결 산<sup>44)</sup>

결산은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와 결산부속서류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예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합산재무제표,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 하여야 한다. 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심의·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사장은 결산서 제출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와 결산부속 서류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예·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합산재무제표를 매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살펴보았는데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회계와 부속명

4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4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원회계로 구분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 연도 및 예·결산의 제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1969년 7월 19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1981년 2월 28일 사립대학의 예산과 회계만을 규정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하고 1996년 6월 29일 전문 개정하여 그 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실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대학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 <표 3-6> 과 같다.



〈표 3-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의 비교

구 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적용범위	전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회계처리 방식	단식부기 (단, 법인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복식부기
내 용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원칙 제시 ① 자금관리 ② 예·결산 ③ 회계처리 ④ 감사 ⑤ 재산 ⑥ 물품 ⑦. 장부와 서식	예산 및 회계중심 ① 예 산 ② 회계처리(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③ 자산·부채의 평가 ④ 결 산
예 산 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자금예산서 및 예산부속명세표
결 산 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①재무제표 ①자금계산서, ②대차대조표, ③운영계산서 ②합산 또는 종합재무제표
비 고		① 부속병원회계:병원회계준칙 ② 수익사업회계:기업회계기준

### 3. 우리나라 學校法人 會計 關聯 法·規定

우리나라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학교법인이 설치 할 수 있는 사립학교로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②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③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관련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3-7> 과 같다


<표 3-7>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 관련 법·규정

법령	조항	주요내용
<p><b>사립학교법</b></p> <p>1963. 6. 26 법률 제1362호</p> <p>2001. 1. 29 법률 제6400호 30차 개정</p>	<p>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5조 (자산) 제6조 (사업)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p> <p>제29조 (회계의 구분)</p> <p>제30조 (회계연도)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 (재산목록 비치)</p> <p>제33조 (회계규칙 등)</p> <p>제43조 (지원)</p>	<p>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및 회계 구분 경리</p> <p>①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담보제공시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시 관할청의 허가</p> <p>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나 담보 제공 불허</p> <p>③ 수업료 및 납부금 받을 권리와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예금 채권 압류 불가</p> <p>①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구분</p> <p>② 수업료 및 기타 기부금 별도 계좌 관리</p> <p>③ 학교 예산 예·결산자문위원회자문 및 학교장 집행</p> <p>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예·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p> <p>매회계연도말 현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등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비치</p> <p>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필요 사항으로 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의 근거</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보조금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법 령	조 항	주 요 내 용
<p><b>사립학교법 시행령</b></p> <p>1969. 12. 4 대통령령 제4396호</p> <p>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16차 개정</p>	<p>전문 30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제2조 (수익사업의 신고)</p> <p>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p> <p>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p> <p>제5조 (재산의 구분)</p> <p>제9조(감사의 보고)</p> <p>제9조의3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p> <p>제11조 (기본재산의 구분)</p> <p>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p> <p>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의 세입 세출)</p> <p>제1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p>	<p>사립학교법 제6조 관련</p> <p>사립학교법 제6조 관련된 세부사항</p> <p>① 사립학교법 제10조 관련</p> <p>②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관련서류 규정</p> <p>학교법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구분 감사보고 기한</p> <p>① 사립학교법 제21조 관련</p> <p>②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관련 사항</p> <p>사립학교법 제28조 관련 사항</p> <p>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교환·담보·용도변경·의무의 부담·권리포기 등)에 관한 사항.</p> <p>① 사립학교법 제28조 관련</p> <p>② 학교법인이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p> <p>학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 규정</p> <p>① 사립학교법 제31조 관련</p> <p>②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제출시기 규정</p>
<p><b>초·중등교육법</b></p> <p>1997. 12. 13 법률 제5438호</p> <p>2001. 4. 7 법률 제6462호 4차 개정</p>	<p>전문 5장, 63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제10조 (수업료 등)</p> <p>제12조 (의무교육)</p> <p>제30조의 2 (학교회계의 설치)</p> <p>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p> <p>제33조 (학교발전기금)</p>	<p>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납</p> <p>국·공립·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p> <p>학교회계 세입 세부 사항</p> <p>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p> <p>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방법</p>




법령	조항	주요내용
<p><b>초·중등교육법 시행령</b></p> <p>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p> <p>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0호 8차 개정</p>	<p>전문 6장 107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64조 (학교발전기금)</p>	<p>사립학교의 설립인가</p> <p>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②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집행의 학교장에게 위탁 ③ 위탁받은 발전기금의 별도회계관리, 집행계획, 집행내역 보고 및 감사</p>
<p><b>고등교육법</b></p> <p>1997. 12. 13 법률 제5439호</p> <p>2001. 1. 29 법률 제6400호 2차 개정</p>	<p>전문 4장 64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7조 (교육채정) 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제11조 (수업료 등)</p>	<p>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보조 및 예산, 결산 공개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 및 조장을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조치 강구 수업료와 기타 기부금 수납</p>
<p><b>고등교육법 시행령</b></p> <p>1998. 2. 24 법률 제15665호 2001. 12. 31 법률 제17444호 4차 개정</p>	<p>전문 5장 72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2조 (학교 설립 등) 제3조 (학교현장)</p>	<p>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등 재정운영, 시설·설비, 장기발전 계획 등</p>

법 령	조 항	주 요 내 용
<p data-bbox="204 513 375 620"><b>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b></p> <p data-bbox="197 712 385 780">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p> <p data-bbox="197 832 385 900">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7호</p>	<p data-bbox="408 330 705 397">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3조 (수익용 기본재산)</p> <p data-bbox="408 788 724 817">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p>  <p data-bbox="529 942 773 1010">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p>	<p data-bbox="794 369 1188 778">           ①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②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 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수익이 있는 것            ③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 치한 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 확보         </p> <p data-bbox="794 788 1188 1087">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 해당가 액을 소속학교 운영경비로 충당하여 야 하며 학교 운영경비는 학교 및 부 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하며 학교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p>
<p data-bbox="204 1190 375 1335"><b>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b></p> <p data-bbox="197 1392 385 1460">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p> <p data-bbox="225 1470 358 1499">2001. 11. 20</p> <p data-bbox="197 1547 385 1615">교육인적자원부령 제 795호</p>	<p data-bbox="408 1180 735 1248">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p>	<p data-bbox="794 1219 1188 1363">규정 13조 3항 규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 본재산의 범위 규정</p> <p data-bbox="794 1373 1188 1673">           ① 학교설립 인가시 : 연간 학교 회 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 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 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의50% 이상            ②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 용 기본재산의 75% 이상         </p>

법 령	조 항	주 요 내 용
<p>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p> <p>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p> <p>2001. 11. 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795호</p>	<p>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p> <p>제9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p> <p>제10조 (수익의 범위 등)</p>	<p>③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p> <p>④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의 재산으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li> <li>2. 건물</li> <li>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 주식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함)</li> <li>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 이상)</li> <li>5. 국채·공채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시한 것</li> </ol> <p>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은 편제 완성 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하며 학급·학과 또는 학생 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p> <p>앞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학교 세입 합계액에서 전입금수입액, 원조보조금수입액, 기부금수입액, 학교운영지원비수입액을 뺀 금액</p> <p>규정 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①제세공과금 ②법정부담경비 ③교육시설비부담액 ④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⑤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법령	조항	주요내용
<p><b>대학설립 운영규정</b></p> <p>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p> <p>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4호 3차 개정</p>	<p>전문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조 (목적)</p> <p>제7조 (수익용 기본재산)</p> <p>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p>	<p>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p> <p>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p> <p>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의 범위</p> <p>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방법</p> <p>설치·경영 대학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p>
<p><b>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b></p> <p>1996. 8. 10 교육부령 제685호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1호 3차 개정</p>	<p>전문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p> <p>제11조 (소득의 범위)</p>	<p>규정 제7조와 관련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의 총액 및 학교회계 운영수익 규정</p> <p>규정 제8조와 관련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규정</p>
<p><b>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b></p> <p>1969. 7. 10 문교부령 제243호</p> <p>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차 개정</p>	<p>전문 5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제1조 (목적)</p> <p>제2조 (보조와 결정)</p> <p>제3조 (보조의 교부)</p> <p>제4조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p> <p>제5조 (보조와 감독)</p>	<p>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 또는 원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p>

법 령	조 항	주 요 내 용
<p><b>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b></p> <p>1969. 7. 23 문교부령 제211호 2002. 2. 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9호 45차 개정</p>	<p>전문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조 (목 적) 제2조 (징수금액)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 (징수방법) 제5조 (징수기일)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제7조 (징 별) 제8조 (가산금 등) 제9조 (삭 제) 제10조 (공고 등)</p>	<p>초·중등교육법 제10조 관련 고등교육법 제11조 관련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 금액, 면제·감액, 징수 방법, 징수 기일, 수업료의 반환, 수업료 징수 기일 경과 후의 징별 등을 규정</p>
<p><b>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b></p> <p>1969. 7. 19 문교부령 제246호 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 8차 개정</p>	<p>전문 7장, 60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 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3장 (회 계) 제4장 (재 산) 제5장 (물 품) 제6장 (장부와 서식) 제7장 (보 칙)</p>	<p>사립학교법 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 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p>
<p><b>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b></p> <p>1996.6. 29 전문개정 교육부령 제679호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차 개정</p>	<p>전문 4장, 42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 칙) 제2장 (예 산) 제3장 (회 계) 제4장 (결 산)</p>	<p>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p>

법령	조항	주요내용
<p><b>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b></p> <p>1998. 9. 16 교육부령 제724호</p>	<p>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회계의 설치 등) 제3조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금의 운영) 제5조 (회계연도) 제6조 (회계방법) 제7조 (결산보고)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제9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10조 (회계기관)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용)</p>	<p>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p>
<p><b>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b></p> <p>1995. 1. 5 법률제4868호 1997. 12. 13 법률제5454호 개정</p>	 <p>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p> <p>전문 34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p>
<p><b>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b></p> <p>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13차 개정</p>	<p>전문 7장 95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40조에 규정한 계약에 관한 사항)</p>

<p><b>한국사학진흥 재단법</b></p> <p>1989. 3. 31 법령 제4103호 2001. 1. 29 법령 제6400호 4차 개정</p>	<p>전문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사립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에</p>
<p><b>한국사학진흥 재단법시행령</b></p> <p>1989. 7. 13 대통령령 제12756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5차 개정</p>	<p>전문 8조 및 부칙으로 구성</p>	<p>관한 사항을 규정</p>



### 第3節 韓國과 日本, 韓國과 美國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 1. 韓國과 日本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일본의 경우 사학기관 회계기준은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sup>45)</sup>이 있어 이 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은 총 5개의 장과 3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학기관재

45) 일본 학교법인 회계기준(1971. 4. 1 문부성령, 제18호. 1994. 7. 4개정, 문부성령 제31호)

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과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을 장별 내용과 규정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성 내용

(1) 제1장 총칙 : 제1조(학교법인 회계기준), 제2조(회계 원칙), 제3조(수익사업회계), 제4조(계산서류), 제5조(총액표시).

(2) 제2장 자금수지계산 및 자금수지계산서 : 제6조(자금수지계산의 목적), 제7조(자금수지 계산 방법), 제8조(계정과목), 제9조(자금수지계산서 기재 방법), 제10조(자금수지계산서의 기재 과목), 제11조(전기말 미수금 등), 제12조(자금수지계산서 양식), 제13조(자금수지내역표의 기재 방법 등), 제14조(인건비지출내역표의 기재 방법 등)

(3) 제3장 소비수지계산 및 소비수지계산서 : 제15조(소비수지계산서의 목적), 제16조(소비수지계산 방법), 제17조(계정과목), 제18조(소비수지계산서의 기재 방법), 제20조(당년도 소비수입초과액 등의 기재), 제21조(차년도 이월소비수입초과액 등), 제22조(차년도 이월소비수입초과액 등의 기재), 제23조(소비수지계산서의 양식), 제24조(소비수지내역표의 기재 방법 등)

(4) 제4장 대차대조표 : 제25조(자산의 평가), 제26조(감가상각), 제2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28조(징수불능액의 충당), 제29조(기본금), 제30조(기본금 전입), 제31조(기본금 감소), 제32조(대차대조표의 기재 방법), 제33조(대차대조표 기재 과목), 제34조(감가상각자산 등의 기재 방법), 제35조(대차대조표의 양식), 제36조(부속명세표의 기재 방법 등)

(5) 제5장 지사 관할 학교법인에 관한 특례 : 제37조(징수불능충당의 특례), 제38조(기본금 전입에 관한 특례 등)

## 2) 규정 내용 비교

(1)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학교의 회계 기준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이며 일본의 경우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이다.

(2) 제1조 학교법인 회계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진흥조성법(昭和50년 법률 제61호)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 계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 계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의 기본 원칙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에는 건전성, 공공성, 신뢰성, 명료성, 계속성,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진실성, 정확성, 명백성, 계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일본 학교법인 회계 기준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처리 및 계산 서류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 사업회계에 대해서는 제2조 회계원칙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총액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금과 식당, 교육활동에 부수인 활동, 기타 경과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순액(純額)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금수지계산서를 작성하며 자금 계산의 목적은 같고 우리나라는 자금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 연도에 실현된 자금 수입을 예산 항목과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나 일본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 자금의 수입 및 당해 회계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수입으로 전 회계 연도 이전

의 회계 연도 지급 자금의 수입으로 되는 것(전기말선수금) 및 차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 연도에 지급 자금으로 수입이 되는것(기말미수금)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 지출 계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을 예산 항목과 미시용 차기이월금으로 구분 작성하나 일본은 당해 회계 연도에 있어 지급자금의 지출 및 당해 회계 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지출로 전 회계 연도 이전의 회계 연도에서 지급 자금이 지출이 되는 것(전기말선수금) 및 차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서 지급 자금의 지출이 되는 것(기말미지급금)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금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 학교법인의 장은 필요한 계정 과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회계 연도의 자금 수입 중 전기말선수금 및 기말미수금은 수입의 부의 차감 과목으로 자금수지계산서의 부에 자금 지출중 전기말선수금 및 기말미지급금은 지출의 부의 차감 과목으로 자금수지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소비수지계산서를 작성하며 계산의 원칙은 비슷하고 계산의 방법은 우리나라는 운영수익의 계산은 회계 연도의 운영 수익을 계정 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나 일본의 경우 소비 수입은 당해 회계 연도의 귀속수입(학교법인의 부채가 되지 않는 수입. 이하 동일함)을 계산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기본금 전입액을 차감해 계산하며 우리나라는 운영 비용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 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 과목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소비지출은 당해 회계 연도에 소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및 당해 회계 연도에 있어 용역의 대가에 기초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작성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 및 운영 차액으로 구분하나 일본은 자산의 부, 부채의 부, 기본금의 부 및 소비수지차액의 부를 설치하고 자산, 부채, 기본금 또는 소비수지차액의 과목 각 각에 당해회계 연도 말의 금액을 전 회계 연도 말의 금액에 대비시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 또는 증여 당시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토지의 경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 토지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10) 우리나라는 감가상각을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 시가로 평가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 한 후 시가가 회복된 경우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환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그 시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 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우리나라는 징수 불능액의 충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 금전채권에 대하여 징수 불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 불능 예상액을 징수 불능 충당금에 전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금의 증감에 대하여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의 운영차액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본금 전입을 첫째, 학교법인이 설립 당초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의 가액 또는 신설 학교의 설치 또는 이미 설치된 학교 규모를 확대 또는 교육의 충실 향상을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과 장래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하는 금액 기타 자산의 가액, 기금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지(保持)하고 또 운영하는 금액 기타 자산의 가액, 항시적으로 보지(保持)해야 자금으로서 별도로 문부대신이 정한 금액, 둘째, 학교법인이 장래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하는 금액 기타 자산의 가액, 기금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지하고 운영하는 금액 기타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는 기본금의 전입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계되는 기본금 전입계획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법인이 설립 당초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의 가액이나 신설 학교 설치나 설치된 학교 규모의 확대나 교육의 충실 향상을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차입 포함) 또는 미지급금(지급어음 포함)에 의해 취득한 경우 당해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차입금 또는 미지급

금의 상환 또는 지급(새로운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에 의한 경우 제외)한 회계 연도에 상환 또는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으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기본금 감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재정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을 내각 또는 폐기 처분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기본금을 전기 이월운영차액 수정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학교법인이 그 제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한 제반 활동에 관계되는 기본금에 대한 전입액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일본의 경우 징수 불능 총당의 특례규정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를 소관청으로 하는 학교법인(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함. 이하 지사관할 학교법인이라함)은 징수불능액의 총당의 규정에 관계없이 징수 불능의 예상액을 징수 불능 총당금에 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다.

(16) 일본은 전입금 전입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지사관할 학교법인은 기본금 전입의 규정에 관계없이 항상적으로 보지(保持)해야 할 자금으로서 별도로 문부대신이 정한 금액에 계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사관할 학교법인은 기본금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韓國과 美國의 私學機關 會計基準의 比較

미국의 대학회계기준은 미국 대학 관리자 전국연합회(NACUBO :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에서 간행한 “대학 경영(CUBA :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sup>46)</sup>과

---

46)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NACUBO),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에서 발표한 감사지침으로 ‘대학 감사지침(ACU : Audits of College University)’<sup>47)</sup>가 있어 이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학교의 회계 기준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그 특례규칙이며 미국의 경우 ‘대학 감사지침’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의 기본 원칙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에는 건전성, 공공성, 신뢰성, 명료성, 계속성,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대학의 감사’에서는 자원의 효율성과 기금 회계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3) 기금회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인식하여 비제한유동기금, 제한유동기금, 대여기금, 기부 및 유사기금, 연금 및 생활수입기금, 시설기금, 대리인 기금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자원을 기금별로 독립시키고 있다.

4) 예산회계는 우리나라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감사지침에는 명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인식을 우리나라의 경우 실현주의 및 기간귀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기금별로 예외가 있다.

6)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에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금의 투자에 의해 유지되는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7)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특정한 규정이 없다.

8) 재무제표는 우리나라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를 작성하

---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4th. Washington D.C : NACUBO, 1992.  
47) Audit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ICPA, 1975.

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대차대조표, 기금상태변동표, 당좌기금수지변동표와 기타서류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제도에 대하여는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학교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금마다 내부 통제와 감사 절차를 규정하여 실시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0) 재산의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는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의 관리자, 등기 등의 절차, 증자보고 등 관리 방법 등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2조 ~ 제46조에, 자산의 평가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특정규정은 없고 투자자산의 평가, 고정자산 회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 우리나라는 기본금에 대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 제10항 규정하고 있고 증가·감소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기본금과 비슷한 유사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12) 수익사업회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규정이 없으나 미국은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다른 기관의 운영과는 별도의 기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3) 회계 처리 방법은 우리나라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서 법인회계는 복식부기로, 학교회계는 단식부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서 이 특례규칙을 적용 받는 학교 및 학교법인은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특정 규정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사학기관 회계기준

을 비교 요약하면 <표 3-8> 과 같다

<표 3-8>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사학기관 회계기준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회계원칙	①건전성,②공공성, ③신뢰성,④명료성, ⑤계속성,⑥중요성.	①진실성,②정확성, ③명백성,④계속성.	①자원의 효율성, ②기금회계 중요성.
채무제표	①자금계산서. ②대차대조표. ③운영계산서.	①자금수지계산서. ②대차대조표. ③소비수지계산서.	①대차대조표. ②기금상태변동표. ③당좌기금수지변동 표와 부속서류.
감가상각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균등 상각.	고정자산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분에 대하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기본금 투자에 대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인정.
투자유가 증권평가	인 정	인 정	인 정
회계인식 기 준	현금주의(실현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 법	법인회계:복식부기 학교회계:단식부기	복식부기	특정규정 없음
기본금의 증 감	인 정	인 정	기본금과 비슷한 유사 기금 인정.
기금회계	학교발전기금	규정 없음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여 기금별로 독립



## 第4章 學校法人 會計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第1節 制度上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 1. 學校會計年度와 教育廳會計年度 不一致

관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의 경우 학교 회계연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와는 상관없이 교육청의 회계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에 준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정산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학교 회계연도와 교육청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로 인한 예·결산 등 회계 업무의 간소화·단일화 및 학교회계상 나타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조상충용·부채 등)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학교 회계연도에 교육청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회계 연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즉, 학교 회계연도와 교육청 회계연도의 일치로 학교의 자금 부족액을 재정결함지원금(익년 1~2월분)으로 우선 사용하여 학교에 부채가 있음과 학교의 자금이 남아 있을 을 확인할 수 있어 학교회계의 투명성 제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예·결산 등 회계 업무의 간소화 및 단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會計構造上

현행 사립학교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계구조가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의 학교법인 회계의 기준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7조

(회계의 방법)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단식부기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인에 속하는 학교 중에서도 대학 및 전문대학은 복식부기를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단식부기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회계 처리로 회계의 통일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보고양식이 단식부기에 준하여 정해지고 있다. 여기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1) 복식부기에서는 원장에 자산·부채·수입·지출에 대한 일체의 계정이 있어 자산의 변동이 기록되지만 단식부기에서는 자산의 변동 상황을 일관성 있게 기록할 총계정원장이 현금거래를 기록하는 금전출납부와 세입부, 세출부 및 각종 보조장부가 있을 뿐이다.

(2)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복식부기에서는 총계정원장의 자산·부채·수입·지출의 체계정으로부터 직접 그대로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에서는 명세 기록의 각종 장부에서 혹은 실지 조사에 의하여 자산·부채의 상황을 재산목록에 기록 또는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다.

(3)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가 복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시산표를 통하여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총계정원장기록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총계정원장이 없기 때문에 장부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자기 검증수단이 없다.

### 3. 記錄의 正確性 및 信賴性

회계 기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회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록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이 회계 절차상 또는 장부 조직상으로 우선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단식부기의 회계 기록으로는 장부상의 계수적인 자기 검증수단이 없으므로 기록의 정확성은 연관된 과거의 기록이나 실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계의 기록과 업무량도 방대해져 이와 같은 회계 구조로서는 회계 기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학교법인 회계의 회계 방법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환한다면 회계거래의 기록들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 복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장부의 기록들을 대차별로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정 또는 기록 누락의 발견 또는 예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4. 會計 報告上

단식부기에서는 대차대조표 기록이 극히 힘들고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식부기에서 처럼 연관적이고 총괄적인 장부 기록이나 실지 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정확성이 희박하고 총자산의 수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는 학교의 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각종 조서를 부표로 요구하고 있을 뿐 대차대조표는 제외되고 있다.

### 5. 資產의 再評價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자산 취득 후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

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물가의 변동에 의한 자산 가치의 변화를 무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이 심한 경제 환경에서는 취득 당시의 역사적인 원가와 현재 가치와의 차이를 현재의 시가에 맞게 조정하여 적절한 가치로 표시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교육자 원과 학교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표시될 가액을 평가 조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에서는 필요시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평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원가로,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때의 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에 의한 감정 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로 평가하며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 차액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1965. 3. 31. 법률 제1691호로 제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과 재평가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시지가나 개별 토지의 가격이 현실화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한다는 특례규칙 제31조 (자산 재평가에 대한 특례)에 위배되므로 임의성 게재나 객관성의 결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기준의 정

---

48)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

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第2節 會計處理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 有形固定資産에 對한 減價償却

우리나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에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리조직체에서는 대부분의 고정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증여·기부·출연 등으로 영리기업과는 달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반대급부 없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도 한다.

유형고정자산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특례규칙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특례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감각상각 금지 규정만을 강조하여 취득당시에 취득 원가를 비용화 시키든가 아니면 불용처리시 아무런 회계 처리 절차 없이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취득 당시 금액이 적거나 내용 연수가 짧은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이와 반대의 경우 실무상 부외자산이 되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불용 처분시 장부상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되어 가공 자산이 되므로 이 금액만큼 회계 부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감가상각을 인식한다면 해당 고정자산 장부가액만으로도 교체 시기나 파악이 쉽고 사용 기간에 따라 장부가액의 감소로 감가상각의 정도에 따라 자본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만을 보고 교체 시기의 파악이 힘들고 합리적 예산 수립도 어렵다.

셋째, 학교법인은 토지, 건물, 실험시설,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구 등 감가

상각 자산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자산을 그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한다면 순자산이 감소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경영학 교의 유지·발전이 힘들어 진다.

## 2. 資産・負債의 評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 및 제35조에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 정보이용자 집단에게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현금흐름 예측의 정보 제공 면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 평가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있어 특례규칙에서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자산과 부채가 주로 화폐성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자산·부채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 환율을 정하는 대신 기업회계기준<sup>49)</sup>과 동일하게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환산을 화폐성과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로 구분하여 환산시 별도의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3. 費用・收益의 認識

회계의 인식 기준은 수익·지출 또는 비용의 인식 시기에 관련된다.

영리조직체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식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50)</sup> 발생주의

---

49) 기업회계기준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는 거래 인식에서 현금의 유·출입을 조건으로 삼지 않아 수익은 그것이 실현되었거나 가득 되었을 때 비용은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인식된다. 이에 반하여 현금주의는 현금의 화폐를 중심으로 수익은 현금의 수입에 의해서, 비용은 현금의 지출에 의해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학 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살펴보면 자금의 인식은 현금주의 혹은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용과 수익의 인식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학교법인의 수입과 지출이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비용과 수익의 인식도 현금주의에 의하여서 회계 처리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비용과 수익의 인식은 현금 주의 보다는 발생주의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학교법인의 회계 처리에서는 실무상의 편리성과 법규정 때문에 현금주의나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회계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의 거래를 반영시켜 주지 못한다. 즉, 한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 중에서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항목은 모두 제외되고 현금이 수반된 사항은 기간의 귀속에 관계없이 당기의 활동 원가를 구성하는 모순을 갖는다.<sup>51)</sup>

둘째, 수정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시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보고되지만 수익은 현금 회수기준에 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몇몇 항목은 원가에 포함되지만, 전기에 취득한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원가는 제외되는 모순을 갖는다.<sup>52)</sup>

이와 같이 발생주의 이외의 회계 인식 기준은 한 기간의 발생원가를 충실

50)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SFAC) No.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 1980, para. 50.

51) FASB Statement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SFAS) No.93."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FASB 1987, para. 21.

52) FASB SFAS, No. 93, *op.cit.*, para. 21.

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sup>53)</sup> 발생주의 회계가 더 나은 회계 인식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sup>54)</sup>



---

53) FASB SFAS, No. 6, *op.cit.*, paras.58~97.

54) FASB SFAS, No. 93, *op.cit.*, para 21.



## 第 5 章 結

##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특성과 학교법인 회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분석하고 일본 및 미국과의 사학기관 회계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교법인 회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경우 교육청의 회계 연도에 준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회계 연도와 교육청 회계 연도의 불일치로 예·결산 등 회계 업무의 간소화, 단일화 및 학교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증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계 업무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연도가 학교와 감독관청이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의 종류에 따라 그 지침이 달라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지침을 정하여 회계 업무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학교 회계 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통한 보다 편리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 회계 제도인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여야 한다. 복식부기는 회계 거래의 기록들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정 또는 기록 누락의 발견이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중 어느 것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회계 제도의 변환은 많은 비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과 혼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회계 제도의 제반 환경과 실무자들의 이해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고가의 고정자산의 확보·수선·유지·교체 등 설비자산에 대한 정보

와 올바른 재무 상태 파악을 위하여 감가상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 사학기관 회계와 관련된 규정에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이해관계자 또는 집단 즉, 회계 정보 이용자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관리적인 규정이 없다. 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나 집단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한 자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효율적,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학기관의 모든 경영 활동에 기본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사학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법인 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로는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만을 위한 회계 기준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업회계 기준을 모델로 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사립학교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 회계와는 성격이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을 위한 독자적인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준수하는 범의 내에서 회계 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회계 기준의 설정과 회계 제도의 정립은 정부나 감독관청의 일방적인 법령의 제정이나 공포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이 사학기관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전문가와 학자 사학기관 실무자를 동참시켜 사학기관 회계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정립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 參 考 文 獻

## 1. 國內文獻

### 1) 書 籍

- 권수영 · 이재경, 제3판 중급재무회계, 박영사, 2000.
- 김인겸, 회계원리(개정판), 박영사, 2001.
- 박충환,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한국세정신보사, 1986.
- 박충환, 비영리기관의 회계(제3판), 법문사, 1996.
- 성삼제,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 윤성식 · 권수영, 정부회계, 법문사, 2001.
- 이동규, 비영리회계(대학회계 및 예산), 형설출판사, 1994.
- 이동규,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 선학사, 2001.
- 장계희,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안), 현대문화,
- 장계희, 지방자치단체회계 복식부기 모델(안), 도서출판 반야의 집, 2000.

### 2) 論 文

- 김동화, “학교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마금화, “우리나라 중등사학의 재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수, “학교법인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권호, “학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경수, “우리나라 사립중등학교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 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홍성주, “사립중등학교의 회계제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 刊行物 및 其他 資料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1996. 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 길잡이, 2000. 12.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통계연보, 2001.
- 교학사, 교육법전, 2002.
- 제주도교육청, 다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2002. 5.
- 제주도교육청, 사학기관 업무편람, 2000. 12.
- 제주도교육청, 2002 제주교육통계연보, 2002. 7.
- 주인기·정병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 3호, 한국회계학회, 1995.
- 서울특별시 사립중·고행정실장협의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무연수교재, 2001, 5.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회계 예산업무 편람, 2000.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한국사립중·고등학교행정실장협의회), 학교 지출사무의 실제, 2000. 3.
- 한국사립중·고등학교행정실장협의회, 학교 회계사무의 실제, 2000. 10.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 경영 정보 자료집 제1집, 1997, 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 경영 정보 자료집 제2집, 1998, 5.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 경영 정보 자료집 제3집, 1999, 1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 경영 정보 자료집 제4집, 2000, 12

## 2. 外國文獻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AAA,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actice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46, 1971.  
AICPA, Audits of College and University(ACU), 1975.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FAC), No 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 FASB, 1980.  
FASB, Sta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SFAS), No 93, “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n-for-profit Organization”, FASB 1987.  
Malvarn J. Gross, Principle of Accounting & Financial Repor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N.Y : John Wiley & Son Inc. 1979)  
NACUBO,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CUBA), 4rd, 1992.  
Robert & Anthony, “Making Sense of Nonbusiness Accounting”, Havard Business Review(May-June, 1980), p83.

# Abstract

## Study of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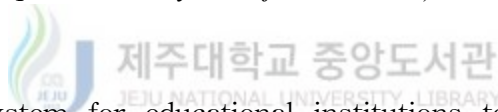
Hong, Chang-soo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ang-bong*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day has been enacted for the purposes of budgetary control and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pervisory authority rather than for providing economic information required by parties of interest. Under this situation, accounting information beneficial to parties of interest is not being provided.

Accounting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must be improved so as to allow parties of interest holding significant interest in runn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access useful inform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 thereby enabling them to make efficient and reasonable decisions.

For the purposes of suggesting ways of improving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raised in connection with school management, this study has undertaken research to identify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to arrive at potential resolu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scal year for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s to be matched in order to accomplish simplification of the budgeting and settlement businesses, unity, enhanced transparency in accounting for school, and improved efficiency of the fiscal management.

Secondly,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should be adopted to ensure the accuracy of accounting record, credibility and moral hazard or errors are prevented.

Thirdly, depreciation system must be adopted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identification of financial position and improving and replacing the lagged fixed assets.

Fourth,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funding statement, balance sheet, and operating stat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arties of interest to make decisions.

Fifth, accounting standards reflective of environmental and systemic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s non-profit institutions must be enacted.